

보도설명자료

(13. 7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공기업, 조세회피처에 무더기 서류상 회사 확인”

(13.7.1, KBS)

1. 기사 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공기업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76개를 운영(조세회피처에 52개 운영)하고 있으며, 감독부처에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공기업이 페이퍼컴퍼니 등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‘공기업·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’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
 - 보도된 11개 에너지공기업의 76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대부분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를 이루어진 것임
- 에너지공기업이 진출국이나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는,
 - 첫째, 진출국이 사업 추진시 회사 설립을 의무화 하는 경우(one project one company)
 - 둘째, 해외 투자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, 환경적 위험의 모회사 전이 방지(모회사 보호)
 - 셋째,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인세를 절약하는 효과(국부유출 방지)를 누리기 위함이며, 이는 국제적인 자원·에너지 기업이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투자 방식임
- 앞으로도 정부는 에너지공기업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, 운영 하는 과정에 대해 지도·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

※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(02-2110-4868)
정재환 사무관(02-2110-5411)